예산총칙

제1조: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	j	ছী	계	별		세입.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			계			444,622,792	13,338,684
1	•	일	반	회	계	431,122,644	12,933,679
2	•	특	별	<u>ই</u>	계	13,500,148	405,004
	의	豆	보	호 기	급	1,034,458	31,034
	주민	.소득지	1원 및	생활안정기	기금	2,099,383	62,981
	주		차		장	8,798,940	263,968
	주	거 환	경 7	개 선 사	업	325,710	9,771
	발 전	 선 소 주	변지	역 지 원 시	나 업	606,525	18,196
	지	하	수	관	리	635,132	19,054

제2조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: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: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4,116,785천원,

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는 1,589,221천원으로 한다.

제5조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세, 보통조정교부금,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